제316회 정례회
2012.12.12.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2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 4. 22)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직접 정하였기에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유치원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유치원을 제외하고 조례의 내용 중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2010. 6. 29)과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1) 특수목적고등학교 인용 법령조문을 정비함

2)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계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특성

화고등학교'로 일원화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함

3) 학교 및 교육과정 등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결정 학교에서 제외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직접 정하였기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사립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학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 가목 중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2조제4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	제2조(징수금액) ---------- 1. <삭 제> 2. ---------- 3. ---------- 4. ---------- 가.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

현 행	개 정 안
등학교	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다. <삭 제>
라.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라. ----------
5. 고등기술학교	5. ----------
6. 각종학교	6. ----------

관 계 법 령 발 췌

□ 유아교육법

제25조(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는 아니 된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 4. 삭제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 9. 삭제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4.22.]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

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징벌) ①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